

수원지방법원 2024. 5. 8 선고 2024가단51635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5. 8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C 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2지분에 대하여 2022. 5. 13. 체결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소외 C (주민등록번호 1 생략)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2지분에 대하여 2022. 12. 8.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101407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[별지]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곽동우

별지